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 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<b>658,725,878</b>	<b>22,823,774</b>
일반회계	547,036,689	16,411,101
특별회계	111,689,189	6,412,673
기타특별회계	12,156,558	364,695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교통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</li> <li>• 기반시설특별회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824,848</li> <li>7,063,616</li> <li>3,937,174</li> <li>330,920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4,745</li> <li>211,908</li> <li>118,115</li> <li>9,927</li> </ul>
공기업특별회계	99,532,631	6,047,978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0,247,631</li> <li>54,685,000</li> <li>14,600,000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907,428</li> <li>1,640,550</li> <li>3,500,000</li> </ul>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548,428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 
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